○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-458호(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-0458호 전기용품 안전기준(1종) 개정 정정고시)

관보 제20359호(2022. 10. 25.)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-458호(전기용품 안전기준(2종) 개정 고시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2년 11월 22일

국가기술표준원장

관보내용	정정사항	비고
화장실용 전기기기 안전기준	화장실용 전기기기 안전기준	
(KC 60335-2-84)	(KC 60335-2-84)	
부 칙(고시 제2022-0458호, 2022.10.25.)	부 칙(고시 제2022-0458호, 2022.10.25.)	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	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정정
단, 기존 안전기준(고시	단, 기존 안전기준(고시	
2015.9.23.)은 1년 후	2016.2.19.)은 1년 후	
(2023.10.24.)까지 병행 적용	(2023.10.24.)까지 병행 적용	
한다.	한다.	